

모바일 게임 해외수출 증대를 위한 퍼블리싱 지원 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과 쥬파티게임즈(이하 ‘파티게임즈’)는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사업’에서 선별된 게임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KOCCA 주관의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모바일게임 중 북미와 일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게임을 선별하여 해외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 2조 (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3조 (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력을 한다.

-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게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게임을 심사를 통해 선별한다.
- 선별된 게임 중 시장성이 충분한 게임이라고 판단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퍼블리싱을 적극 지원 및 글로벌시장에 우선 출시하도록 노력한다.

제 4조 (실무협의회)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및 교류협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비용) 본 협약서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6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7조 (효력 발생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014년 6월 10일(이하 '종료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 유효기간 내에 서면으로 효력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종료일에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8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기타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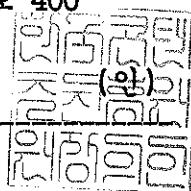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협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9월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원장 흥상표



(주)파티케임즈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19 JS타워 3

층

대표이사 이 대 형



모바일 게임 해외수출 증대를 위한 퍼블리싱 지원 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과 쥬웹젠(이하 ‘웹젠’)은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사업’에서 선별된 게임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KOCCA 주관의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모바일게임 중 북미와 일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게임을 선별하여 해외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 2조 (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3조 (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력을 한다.

-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게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게임을 심사를 통해 선별한다.
- 선별된 게임 중 시장성이 충분한 게임이라고 판단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퍼블리싱을 적극 지원 및 글로벌시장에 우선 출시하도록 노력한다.

제 4조 (실무협의회)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및 교류협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비용) 본 협약서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6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7조 (효력 발생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14년 6월 10일(이하 '종료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 유효기간 내에 서면으로 효력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종료일에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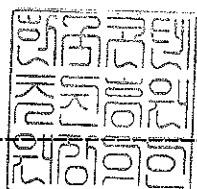
제 8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기타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협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9월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400

율장 흉상



(주)웹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6번지 DTC타워 1관



모바일 게임 해외수출 증대를 위한 퍼블리싱 지원 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과 주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은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사업’에서 선별된 게임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KOCCA 주관의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모바일게임 중 북미와 일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게임을 선별하여 해외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 2조 (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3조 (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력을 한다.

-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게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게임을 심사를 통해 선별한다.
- 선별된 게임 중 시장성이 충분한 게임이라고 판단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퍼블리싱을 적극 지원 및 글로벌시장에 우선 출시하도록 노력한다.

제 4조 (실무협의회)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및 교류협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비용) 본 협약서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6조 (비밀유지)

- 양 기관은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정보, 영업비밀 또는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 3자에게 공개·제공·제시 또는 누설하거나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 7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14년 6월 10일(이하 '종료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 유효기간 내에 서면으로 효력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종료일에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8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기타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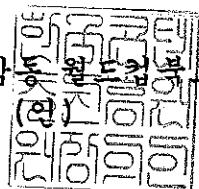
제 9조 (기타)

- 본 협약은 제6조 (비밀유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본 협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9월 11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로 400
원장 홍상표



(주)넥슨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7-27
대표이사 서민



모바일 게임 해외수출 증대를 위한 퍼블리싱 지원 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과 (주)CJ Internet Japan(이하 ‘CJ Internet Japan’)은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사업’에서 선별된 게임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KOCCA 주관의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모바일게임 중 북미와 일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게임을 선별하여 해외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 2조 (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3조 (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력을 한다.

-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게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게임을 심사를 통해 선별한다.
- 선별된 게임 중 시장성이 충분한 게임이라고 판단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퍼블리싱을 적극 지원 및 글로벌시장에 우선 출시하도록 노력한다.

제 4조 (실무협의회)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및 교류협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비용) 본 협약서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6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7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014년 6월 10일(이하 '종료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 유효기간 내에 서면으로 효력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종료일에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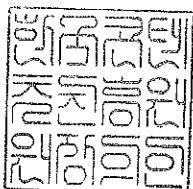
제 8조 (세부사항)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기타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협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8월 14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주)CJ Internet Japan



〒105-0003 東京都港区西新橋2-7-4
CJビル6階

CJインターネットジャパン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 泰

